

제 1595 호
1991. 9.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공 문 시 행
 -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3
- 규 칙
 - 제 2429 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3
 - 제 2430 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4
 - 제 2431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4
- 교 육 위 원 회 규 칙
 - 제 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 6
 - 제 3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판인규칙 9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열매맺는 북방의교 다가서는 평화통일”

● 고 시

- 제 27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0
- 제 275 호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사용료(안) 11

● 건설부고시

- 제 512 호 서울대방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1
- 제 516 호 서울월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2

● 구 고 시

- 제 16 호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고시(용산) 13
-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동작) 14
-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 14
- 제 2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관악) 21
- 제 2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서) 21
-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21
-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23
-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증정정고시(도봉) 24

● 구 공 고

- 제 98 호 주택개발제한지구제2-1구역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광고(구로) 25
- 제 14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25

● 사업소고시

- 제 47 호 하천정용허가 26
- 제 48 호 하천정용허가 26

● 사 령

- 공 지 사 함 29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수원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

16조에 의거 전환조치를 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91.10.10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람,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요청이 없을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1991. 9. 16

구의수원지사무소장

- 아 래 -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회계	제작회사	제작연도	비고
6120-013	변압기	1φ 22.9/3.3KV 3000KVA	3대	수도특별	국제전기	73.3	요정비
		1φ 3300/105V 50KVA	1대	"	제일전기	82.12	"
6105-028	모터	3φ 3300V 8P 600HP	4대	"	한영	66:1 69:1	"
						74:1 76:1	"
		3φ 3300V 10P 500HP	3대	"	"	76:1대	"
						74:2대	"
4320-042	펌프	600/500 600HP 37㎡/분 52m	6대	"	"	63:3 72:2	"
		500/450 500HP 21㎡/분	4대	"	"	78:1	"
						74:2 76:2	"

규 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429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도특별회계-상하수국장)", "(수도특별회계-업무과장)", "(수도특별회계-경리계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소속행정기관(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정수관-기관장(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경리관-기관장

분임경리관-총무부장, 서무과장

채권관리관-기관장

분임채권관리관-각실과장

채무관리관-기관장

분임채무관리관-각실과장

지출원-경리과장(교육원 경리계장)

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서무과장(시립대학교 총

무과장, 교육원 서무계장)

임시전도자금출납원-기관외장이 필요

에 따라 지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430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특별회계-업무과장”을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소속행정기관(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물품관리관: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공무원교육원-사무과장-시립대학교-사무국장

분임물품관리관:종합건설본부-각부장, 공무원교육원-각실과장, 시립대학교-각대학장(처장 및 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물품출납원:종합건설본부, 시립대학교-경리과장, 공무원교육원-사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종합건설본부-총무부는 각과 주무계장 타부는 물품담당공무원(5급) 다만 공사자에게 한하여 각부 공사담당 5급공무원

공무원교육원:각실과 주무계장
시립대학교:각실과 소의장 또는 과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 9. 16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431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찰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공무원의 승급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4항 중 “극무총리”를 “내부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특수한 직무분야, 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시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사무보조직렬의 집배직류 공무원
3. 방호직렬 공무원

제62조제2항 중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를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 중 “0.2점”을 “0.1점”으로 한다.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	
<p>〈별표 3〉 연구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의 학예연구직렬의 연구관·연구사관 중 “고고인류학”을 “국문학, 고고인류학”으로 하고, 보건의연구직렬 중</p>			<p>환경연구직렬관을 삭제하며, 보건의연구직렬관 다음에 환경연구직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환경연구	환경연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생물학 또는 해양생물의학	<p>과를 이수한 자</p>		
<p>〈별표 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 구분표</p>			<p>중 사서직렬관 앞에 전산직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전 산	전 산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p>〈별표 8〉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이외의 기술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직렬관 중 “토목”을 “토목, 수도토목”으로 하고, 직류관 중 “일반토목”을 “일반토목·수도토목”으로 하며, 건축직렬의 5급 이상관 중 “건축기술사”를 “건축사, 건</p>			<p>축기술사”로 한다.</p> <p>〈별표 11〉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의 사무보조 직렬관 중 전산직류를 삭제하고 농업직렬의 농림원예직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며 사무보조직렬 다음에 전산직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신설)</p>					
전산	전산		전자계산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계산기능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자료입력기능사보
<p>(추가)</p>					
농림	영림 원예		화훼재배기능사 1급	화훼재배기능사 2급	화훼재배기능사보
<p>〈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중</p>			<p>농림직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농 립	농 임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약, 농업경영, 농기계			
	임 업 축 산	임업, 축산			

<p>(별표 13)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 특별 임용예정직급 및 전공학과 구분표 중 보건</p>		<p>연구직렬 다음에 별정직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별 정 직</p>	<p>7급 상당</p>	<p>산업미술학과, 환경조각학과</p>
<p>(별표 21) 연구 및 지도희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의 1급</p>		<p>관을 삭제하고 2급의 연구직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급</p>	<p>(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할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기간</p>	<p>(중전과 같음)</p>
<p>(별지 제13호서식) 중 참고란의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교육위원회규칙</p> </div>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9. 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규칙제2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위원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p>		<p>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한 위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위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①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위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②청원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p>

위원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장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써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④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개최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인 등 진술) ①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비·여비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한다.

③제2항의 조처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의 의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사보고)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2.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제10조(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치하였거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소위원회에의 회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1.9.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규칙제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규격) ①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의장의 인
- ②관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③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3조(각인) 위원회에서 관서명과 직명에 '인'자를 붙여 새긴다.

제4조(용도)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1. 의장의 인
- 가. 위원회에서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
- 나. 위원회 의결문서의 교육청으로의 이송
- 다. 기타 위원회를 대표하는 인증문서

제5조(교부·등록 및 관리) ①관인은 의사담당관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 표>

관인의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회장 인	2.7cm	교육감 관인과 동일

②관인은 의사담당관실 주무제장이 판타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파멸되거나 기타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의사담당관에게 재교부 요청한다.

②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인대장은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 관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 또는 위원회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수방법) 관인은 접수 이외의 시간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인의 날인) ①관인의 날인은 관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관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관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관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인관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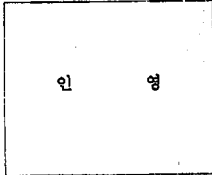
제10조(관인의 사고 보고) 관인의 관수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적)

관 인 대 장



인 영

등 록	년 월 일	검 인	
새 긴 날	년 월 일	폐 기 한 날	년 월 일
새 긴 사람		폐 기 사유	
재 료		인 영 의 상	
적 요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7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성동구고시 제48호(90.12.29)로 지적승인된 "동부도시고속도로(장안교~용비교)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시공고 제207호(91.7.10)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토목1부) 및 구로구청(건설관리과), 중랑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중랑구 면목동 727-26(장안교)~성동구 성수동 685(용비교)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동부도시고속도로(장안교~용비교)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종합건설본부장)

라. 사업개요:도로 폭=15m×2열,
연장=7,200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인가일로부터 92.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서울특별시장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입력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주소	
1	성동구 능동	2-14	대	1,052.6	4.4		동양가스 연료(株)	관악 신림 112-46		
2	"	92-65	대	68.8	8.7		이청자	강남 비천 82-14		
3	송정동	73-1022	천	426.0	297.0		김성균	송정동 72		
4	"	73-196	천	110.0	94.5		김성균	송정동 72		
5	"	73-5	천	1,167.0	21.0		표경덕	송정동 72		
6	"	72-65	천	73.0	71.5		김봉환	송정동 72		
7	"	73-246	천	106.0	48.0		표경덕	송정동 72		
8	"	73-244	천	268.0	260.0		박춘복	송정동 72		

●서울특별시고시제275호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사용료(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중 은
수수영장 사용료를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
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2(사용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이를 고시합니다.

1991.9.16

서울특별시장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은 수 수 영 장	어른 1회	2,000원
	청소년 1회	1,500원

건설부고시

●건설부고시제512호

서울대방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대방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고
사한다.

관계서류 사본은 서울특별시청과 대한주
택공사 서울지사예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91.9.16

건설부장관

1. 사업인정조서(변경)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 위치	사업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당초	영구임대 주택건설	대한주택공사사장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15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3,078㎡ (사업면적: 62,916㎡) - 91사업: 32,183㎡ (대지면적: 22,345㎡) - 차기사업: 30,733㎡ (대지면적: 30,733㎡) • 건축연면적: 45,038.62㎡ • 건설호수: 영구임대 아파트 9동 925호 	65,166,666 천원	91.5~93.10
변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52,620㎡ (사업면적: 62,916㎡) - 91사업: 32,256㎡ (대지면적: 21,960㎡) - 차기사업: 30,660㎡ (대지면적: 30,660㎡) • 건축연면적: 45,053.94㎡ • 건설호수: 영구임대 아파트 9동 925호 	"	"
<p>● 건설부고시제516호 서울월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월계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관계서류 사본은 서울특별시청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9.16 건설부장관</p>						
○ 사업인정조서(변경)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 위치	사업 내용	사업비 (천 원)	사업기간
당초	90영구임대, 분양, 사원용임대 및 91장기임대 주택건설	대한주택공사사장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00번지 일원	1. 단지 ○ 90영구임대 - 대지면적: 49,280㎡ - 건축연면적: 100,725.75㎡ - 건설호수: 8동 2,298호 2. 단지 ○ 90분양 - 대지면적: 25,543㎡ - 건축연면적: 59,778.46㎡	63,814,767	90.10~92.12
					34,527,529 (국민주택자금: 4,720,000)	90.10~92.12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 위치	사업 내용	사업비 (천 원)	사업기간
				-건설호수:7동 652호 ○ 90사원용 임대 -대지면적:15,153㎡ -건축연면적:31,158.96㎡ -건설호수:3동 540호	19,435,832 (국민주택자금: 6,480,000)	90.10~92.12
				○91장기임대 · 대지면적:13,430㎡ · 건축연면적:30,909.97㎡ · 건설호수:4동 540호	18,818,152	91.2~93.6

구 고 시

●**용산구고시제16호**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91.8.8)로 도시계획
지역(용도지역)변경 결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시고시 제254호(91.8.20)로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지역(용도지역)지적고시조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된 사항을 도
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
니다.

2. 관련도면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입니다(전화:
710-3385).

1991.9.16

용 산 구 청 장

구 분	면 적 (㎡)			비 고
	지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294,133,647.9	(감) 3,687	294,129,961	여객정류장(전세버
일반상업지역	21,639,243	(증) 3,687	21,642,930	스) 추가지정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고시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전세버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임대	14,889	(증)3,687㎡
변경	버스정류장(전세버스)		18,576	

○ 도면 생략

●동작구고시제22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772호(87.11.3)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동작구고시 제3호(88.2.5)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허가 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함 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동작구 사당동 136-1 의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사업 (사당플라자)

다.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3,518㎡
- 건축면적
 - 당초:1,705.25㎡
 - 변경:1,735.71㎡
- 연면적(지하 2층, 지상 8층)
 - 당초:14,794.31㎡
 - 변경:14,752.52㎡

라. 사업시행자:동작구 사당동 136-1 경 유산업(주) 오준경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

- 당초:91.12.31
- 변경:92.9.30

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별첨(생략)

사. 위치도 및 평면도:별첨(생략)

●관악구고시제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45호(78.6.15)로 시설결 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5호(79.7.3)로 지 적 승인된 도시계획도로(관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9.16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관악로(봉천고개~봉천시 장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도시계획사업 (관악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확장 B=20~40m, L=500m

라. 사업시행자: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시행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1992.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 명세:별첨

사. 토지(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별첨(계제 생략)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관악구청
 사업시행자 주소 : 관악구 봉천동 1570-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관악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 리종류 및 내용	
1	봉천동 1-948	임	43	43	이 은 선	봉천동 181-6 낙성대 현대④ 101-806	현대건설 (주)	종로구 계동 140-2	근저당설정		
2	1-1455	대	56	56	노 상 훈	봉천동 산 89-11					
3	1-1456	대	85	85	"	"	봉 천 3 동 새마을금고	봉천동 14-4	근저당설정	1-311	
4	1-1457	대	60	60	주 시 주	봉천동 7-187		봉 천 3 동 새마을금고	봉천동 14-4	지상권설정	
5	1-456	대	17	17	김 두 식	봉천동 산 91				1-455	
6	7-455	대	152	152	이 원 숭	영등포구 신길동 233-31	정 품 물 산 (주)	미아동 734-19	근저당설정	7-409 7-184 7-192	
7	7-456	대	2	2	민 병 국	구로구 시흥동 851-17					
8	7-193	대	43	43	"	"					
9	7-44	담	20	20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④ 8-509					
10	7-446	담	136	136	강 신 원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1	7-444	대	131	131	강 신 재 강 인 안	" "					

30-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 리종류 및 내용	
12	봉천동 7-447	담	12	12	김경숙	강남구 반포동 1271 반포(㉠) 88-102					
13	7-448	담	97	97	강연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 101-201					
14	7-45	담	30	30	강신원						
15	7-248	담	36	36	강신재						
16	7-451	잡	5	5	강연안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 8-509					
17	7-457	잡	81	81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 101-201					
18	7-458	잡	23	23	김태관	중구 필동 84-47					
19	1-1458	잡 대	65	65	조상준	봉천동 1613-14					
					김태공	중구 필동2가 84-47					
					이창국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127-1					
					임창호	동작구 상도동 134-214					
					김성학	동작구 상도동 1-490	정종물산 (주)	도봉구 미아동 734-19	근저당설정	1-184 1-490	
<p>물 건 조 서</p> <p>사업시행자명: 관악구청 사업시행자 주소: 관악구 봉천동 1570-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관악로확장공사)</p>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봉천동 1-1455	건 물		16㎡	주거용	노상훈	봉천동 산89-11				1-57

제 1595 호

시

제

1991. 9. 16

42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설계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2	1-1455	대문 수도계량기 정화조 담장 수부속건물		1개	주거용	노상훈	봉천동 산89-11				1-57
				1개							
				1식							
3	1-1456	담장 수부속건물 수도계량기 담대 수부속건물		59주	화장실 공장및주거	노상훈	봉천동 89-11				1-311
				2㎡							
				93㎡							
4	1-1457	담장문 수부속건물 정화조 담대 수부속건물		1개	장독대 화장실	주시주	봉천동 7-187				1-455
				1식							
				1개							
5	1-1458	담대 수부속건물 담장 수부속건물		5㎡	주거용 장독대	김성학	봉천동 1-490				
				3㎡							
				1개							
6	7-455	정화조 담대 수부속건물 상화 담대		17주	수거용	이원술	영등포구 신길동 233-31				7-409
				1식							
				1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권리의종류및내용		
6	봉천동 7-193	건 수	물 도		62㎡	주 거 용							
					1개								
					1식		민 병 국	구로구 시흥동 851-17					
					1개								
7	봉천동 7	담 대	장 문 장		1식		심 순 희	봉천동 7 신원빌라 1-101				1-101	
					1식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102		
						정 상 조	봉천동 7 신원빌라 1-103				1-103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104		
						강 인 안	"				1-105		
						강 인 안	"				1-106		
						강 인 안	"				1-107		
						천 복 수	마산시 화원구 양덕동 95-21 태양④ 209				1-108		
						유 병 순	봉천동 7 신원빌라 1-109				1-109		
						김 철 원	봉천동 7 신원빌라 1-110				1-110		
						박 육 윤	봉천동 7 신원빌라 1-111				1-111		
						최 완 순	봉천동 7 신원빌라 1-112				1-112		
						김 경 중	봉천동 7 신원빌라 1-201				1-201		
						박 덕 숙	용산구 한강로2가 2-190				1-202		
						신 귀 윤	봉천동 7 신원빌라 1-203				1-203		
						윤 순 가	봉천동 7 신원빌라 1-204				1-204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④ 101-201				1-205							
	박 정 화	봉천동 7 신원빌라 1-206				1-2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7	봉천동 7	담 장		1식		박 경 용	봉천동 7 신원빌라 1-207				1-207
						윤 경 주	봉천동 7 신원빌라 1-208				1-208
						이 귀 송	봉천동 7 신원빌라 1-209				1-209
						고 미 향	봉천동 7 신원빌라 1-210				1-210
						김 질 천	봉천동 7 신원빌라 1-211				1-211
						김 금 선	봉천동 7 신원빌라 1-212				1-212
						이 명 훈	봉천동 7 신원빌라 1-301				1-301
						이 영 호	봉천동 66-141				1-302
						안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3				1-303
						박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4				1-304
						박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5				1-305
						박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6				1-306
						박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7				1-307
						정 호	봉천동 7 신원빌라 1-308				1-308
						김 목	봉천동 7 신원빌라 1-309				1-309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1-310
							현대(A) 101-201				
						김 수 상	봉천동 7 신원빌라 1-311				1-311
						정 정 자	봉천동 7 신원빌라 1-312				1-312
						박 맹 두	봉천동 7 신원빌라 2-101				2-101
정 현 수	봉천동 7 신원빌라 2-102				2-102						
노 권 길	봉천동 7 신원빌라 2-103				2-103						
강 인 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2-104						
	현대(A) 101-201										
강 인 안	"				2-105						
강 인 안	"				2-1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권리의종류및내용		
7	봉천동 7	담 장		1식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A 101-201					2-107
						강인안	"				2-108	
						박병호	봉천동 7 신원빌라 2-201				2-201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A 101-201				2-202	
						서병욱	봉천동 7 신원빌라 2-203				2-203	
						이봉설	봉천동 7 신원빌라 2-204				2-204	
						김근수	봉천동 7 신원빌라 2-205				2-205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A 101-201				2-206	
						윤문호	봉천동 98-4				2-207	
						김형석	상복구 하월곡동 83-58				2-208	
						박희배	봉천동 7 신원빌라 2-301				2-301	
						박병운	봉천동 7 신원빌라 2-302				2-302	
						서근화	봉천동 7 신원빌라 2-303				2-303	
						강인안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A 101-201				2-304	
						강인안	"				2-305	
						강인안	"				2-306	
						강인안	"				2-307	
이선주	봉천동 7 신원빌라 2-308				2-308							

30-20

제 1595 호

시

부

1991. 9. 16

●관악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51호(91.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내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m)	원장 (m)	시 점	종 점
신 설	소 로	1		10	220	관악구 봉천동 270-12	관악구 봉천동 196-3
"	"	2		8	83	" 196-227	" 산 59-1
"	"	3		6	180	" 213-18	" 207-6
"	"	3		6	210	" 215-3	" 196-132
"	"	3		6	80	" 산 59-1	" 196-136
"	"	2		8	95	" 738-17	" 222-3
"	"	3		6	176	" 738-17	" 196-299
"	"	1		10	80	" 296	" 300-1

나. 도면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의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24-13

○ 대지면적 : 1,842.60㎡

○ 사업규모 : 아파트 5층 1동 40세대

라. 사업시행기간 : 1991.9.~1992.7.30

●강서구고시제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한일연립계건축조합 대표자 유관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9. 16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명 : 한일연립 계건축 조합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성명 : 한일연립 계건축조합 대표자 유관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10-1

○ 공사시공자 : 유정건설(주) 이상호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31-14

다. 사업시행지

●은평구고시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10.24)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은평구고시 제7호(91.3.23)로 지적 승인된 대조동 38-39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대조동 42-5~59-12간 도로에 대한 은평구고시 제11호(91.4.26) 인가고시한 바 있으나 물건조사증 소유자 및 관계인, 건물 지장물이 누락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변경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은 평 구 청 장

<p>가. 사업의 시행지: 은평구 대조동 42-5 ~59-12</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대조동 38~39간 도로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도로개설 B=6m, L=90m</p> <p>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p> <p>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91.12.3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별첨</p> <p>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p>	<p>성명: 별첨</p> <p>아. 보상제책</p> <p>1) 보상시기: 91. 5.부터</p> <p>2)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의취득</p> <p>○ 보상지급방법</p> <p>토지: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 지급</p> <p>건물: 계약과 동시 70% 지급, 철거후 잔액지급</p> <p>3)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25조제 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p>
--	---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

○ 토지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비 고
1	대조동 42-11	대	1	1	대조동 42-5	김기식	서초구 반포동 723-23	주식회사 한성상호 신용금고 (소공동지점)	근저당권
2	" 42-9	"	68	68	파천시 부림동 주공④711-504	오세희			
3	" 38-53	"	9	9	대조동 38-16	태용원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510-14	길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	" 43-10	"	15	15	" 43-2	남판우			
5	" 43-9	"	2	2	능변동 128-3	이민식			

수용할 토지·물건의 목록과 소유자 관계인

○ 건물(지장물, 기타)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 계	용도	층면적 (수평)	수용면적 (수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대조동 42-5	건물				2㎡	대조동 42-5 김기식	서초구 반포동 723-23	주식회사 한성상호 신용금고	근저당권	
2	42-6	건물 부위 담장				29㎡ 1석 7.2×1.9m	파천시 부림동 주공④711-504	오세희			

연번	지 번	말건의 종류	구조및 구경	용도	층면적 (수평)	수용면적 (수평)	소 용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	대조동 42-6	담 장 장 미 라 일 락 회 양 무 사 철				7.8×1.4m 1주 1주 2주 1주					
3	38-16	소 대 문 담 장				1식 4.6×1.9m	대조동 38-16	대 용 인	경기도 강화군 길감상농업 상면 온수리 510- 영동조합 14	근 자 당 권	
4	43-4	담 장 장 독 대				6×2m 1식	동작구 흑석동 223-24	임 기 원			
5	59-12	대 문 담 장 라 일 락 사 철 향 나 무 정 원 석				1식 3.8×1.8m 1주 1주 1주 1식	대조동 59-12	유 향 덕			
6	41-3	대 문 대문(소) 담 장 정 화 조				1식 1식 9.0×1.8m 3식	대조동 41-3	권점권			

●성북구고시제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호(91.7.25)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25호(91.8.10)로 변경인가고시한 "중암동 57~78 도로개설공사"의 일부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가. 변경내용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9. 16
성 북 구 청 장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91. 12. 31
나. 토지조서 삭제분 : 따로 붙임. 다. 기타사항은 변경 없음.		붙임 : 토지삭제조서 1부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사업의 종류 : 중암동 57~78도로개설공사

외외부서 성북구 토목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암동 125-206	대	5	5		대한주 택공사	강남구 논현동 254			사계
2	125-208	"	2	2		"	"			"
3	산2-127	임	19	19		국 (재무부)				"
4	산2-128	"	8	8		"				"

●도봉구고시제4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증정정고시
 시보 제1550호(91.3.15)에 게재된 도봉구
 고시 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다.

1991. 9. 16

도봉구청장

1. 사업명칭 : 수유2동 535 주변 도로개설공사

2. 정정내용

구분	오				정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토지 조서	수유동 535-297	대	172	수유동 535-18 김지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35-295	"	54	강봉구 가락동 142-1 미성2-1101 최무용	"	"	"	"
	535-275	"	1	수유동 535-50 지명학	"	"	"	"
	535-277	"	14	구로구 시흥동 1002-1,2 력키④ 6-801 이덕규	"	"	"	"
	535-278	"	45	"	"	"	"	"
	535-279	"	60	수유동 535-46 이동선	"	"	"	"
	535-256	도로	45	수유동 535-39 권오갑	수유동 535-390	대	246	동대문구 상봉동 108-6 (후)한진주백

구분	오				전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지장물 조서					수유동 535-39	지대피소	하시멘트벽돌시멘트블럭	6.58㎡	수유동 535-39 권오갑
					"	담장	강시멘트블럭	16.2㎡	"
					"	나무		5주	"

구 공 고

●구로구공고제98호
주택개발재개발시흥제2-1구역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89.9.30)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발 재개발 시흥제2-1구역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들로 부터 주택개발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주택개발재개발 시흥제 2-1구역 안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 구역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1. 9. 16
구로구청장

공람공고내용
가. 공람기간 : 1991.9.13 ~ 1991.10.12(30일간)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시흥제2-1구역조합 사무소

다. 의견서제출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및 시흥제2-1구역 조합설립위원회사무소
라.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명칭 : 시흥제2-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100-1번지 외 342필지
- 3) 시행면적 : 100,707㎡
- 4)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8개월
- 5) 신청인 : 시흥제2-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 위원장 송재영
- 6) 시행계획 : 정관 및 설계도서 생략
주택건립규모 : 아파트 18,20층 17동
 평형별 기구수 12평형 564세대
 23평형 328세대
 33평형 816세대
 44평형 828세대

●중구공고제14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고 공고합니다.

1991. 9. 16
중구청장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내역

입증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인가일
	상호대표자	소재지	상호대표자	소재지	
설비공사업(서울 12-71)	대한외이수업 사산업 (주)	서울 중구 필동 1가 43-1	(주)윤경노 중원	경남 울산시 남구 산정동 255-3	91. 9.

사업소고시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1. 9. 11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7호
하천점용허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1.9.11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수부지 교 밀	하천	44㎡ (22㎡×2동)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1991.9.12 ~ 1992.4.20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542-8	대흥기업사 대표정대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8호
하천점용허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1. 9. 9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1.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85-1번지선 한강	영하천	1,387㎡	유 선 장 (노 들 나 무)	91.9.11 ~92.9.10	인천시 북구 싯정동 588-10	(주)세도 박 상 복
"	"	"	1,142㎡	유 선 장 (진 성 호)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선 한강	"	1,609㎡	유 선 장 (누 에 나 무)	"	"	"
"	"	"	790㎡	유 선 장 (유 진 호)	"	"	"

사 령

5급행정직 공무원 의원면직

●1991년 9월 5일자

영 제32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상덕	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사무원

기능직공무원 전보 및 파견

●1991년 9월 14일자

영 제3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애심	청소년과에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0 등급
김형숙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5조정관실 파견근무 (91. 9. 14 ~ 10. 15까지 새질서생활환경심천범국민대회 준비 요원)	청소년과	"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9월 13일자

영 제3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천	지방별정직 5급상당(부외장비서관) 시의회사무국	신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의원면직

●1991년 9월 13일자

영 제3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태환	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청소년적업훈련원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문심	"	서울지방건물관청	지방별정직 9급상당

6급지방공무원 전입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성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법무담당관 근무를 명함.	강원도	지방행정주사

5급공무원 파견						
◎1991년 9월 14일자		영 제334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정 효 성	국무총리행정조정실(새질서새생활 범국민대회 상왕실) 파견 (91. 9.14~91.10.15)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7급이하 공무원 파견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5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유 광 열	공무원교육원(전산교관요원) 파견 근무 (91. 9.16~91.12.31)	전 산 담 당 관	지방행정주사보			
7급이하 공무원 진보 및 인사교류						
◎1991년 9월 16일자		영 제336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이 우 명 이 한 식	송파구 진출 중로구 진출	운 수 2 파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서기			
공무 국외여행 명명사합						
◎1991년 9월 11일자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부 이 사 관 지 방 행 정 주 사 보	김 명 주 임 선 식	말태아시아	91. 9.15 ~9.21 (7일간)	시비(국외 여비규정 에 의함)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시정회의 (PACOM) 에 서울시 대표로 참 석
행 정 과	행 정 7 급	류 회 동	일본, 대만, 홍콩	91. 9.28 ~10. 4 (8일간)	시비(국외 여비규정 에 의함)	친절향상을 위한 외 국의 민원제도 등의 비교시찰 및 자료수 집
	행 정 6 급	이 흥 상	일본, 대만, 싱가포르	91.10. 5 ~10.12 (8일간)		
	행 정 7 급	송 영 추	"	91.10.12 ~10.18 (7일간)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행 정 과	행 정 5 급	김찬곤	일본, 대만, 싱가포르	91.10.19 ~10.26 (8일간)	시비(국의 여비규정 에 의함)	친철향상을 위한 의 국의 민원제도 등의 비교시찰 및 자료수 집
	행 정 6 급	이인배				
	행 정 7 급	정선우				
시 민 과	행 정 5 급	정태산	일본, 말레 이시아, 싱 가포르	91.10.2 ~10.11 (10일간)	시비(국의 여비규정 에 의함)	장구 민원행정과 보 존문서 관리제도 및 시설 비교연구, 시정 합문서도 운영에 활 용
	행 정 6 급	박근				
문 화 과	지 방 전 문 "라" 급	황성우	일 본	91.10.22 ~11.3 (13일간)	초정단체 부담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비 주관,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세미나 참석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석영	일 본	91.9.26 ~10.2 (7일간)	시비(국의 여비규정 에 의함)	명동지리지와 해외 수단 인습
	"	오세하				
공무 국외여행 영권사항						
◎1991년 9월 14일자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도시계획과	시 설 기 정	장석효	미국, 일본 프랑스, 영 국, 독일	91.9.25 ~10.6 (12일간)	시비(국의 여비규정 에 의함)	외국 대도시 도시계 획 운용실태 조사
	토목기사보	박영철				
공 지 사 항			<p>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지령전산화 기본 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용역명: 소방지령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p> <p>2. 용역개요</p>			
소방지령전산화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제출안내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수보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활동 완료 후 귀서(소)까지의 소방지령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 유·무선통신과 연계처리되는 소방지령전산화 시스템 구축계획 ○ 소방지령 전산화 D/B 구축계획 ○ 서울특별시 지도 D/B 구축계획 <p>3. 제안서제출 대상업체 자격</p> <p>다음 각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하며 공동참여도 가능합니다.</p> <p>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p> <p>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처리 및 전기통신 전문분야에 등록된 업체</p> <p>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업체</p> <p>4. 제안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p> <p>가. 제안참가 안내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9월19일~9월26일 18:00 ○ 제안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10월5일 18:00 ○ 제안서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전산추진반 <p>5. 기타사항</p> <p>가. 파일수행 제안서 작성 안내서, 파일지시서는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소방전산추진반에서 교부합니다.</p> <p>나. 파일수행 제안서, 파일지시서 수령 및 등록시는 업체의 대표가 직접 참가(인장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동거부상 동기된 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p> <p>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p> <p>라. 제안서 평가는 용역파일 수행능력 평</p>	<p>가방법에 의해 심사, 우수업체를 선정 경쟁입찰합니다.</p> <p>마. 제안서 제출참가자는 등록 및 제안서 제출전 반드시 당 본부에 비치된 제안유의사항 및 제안조건을 숙람하시기 바랍니다.</p> <p>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본부 전산추진반(733-1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9.16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p>
--	---